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7호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각종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고,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추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
- 나.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 033-640-4100
- 팩스: 033-640-4070

붙임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구현하기 위한”을 “구현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구성 될”을 “구성될”로, “적극”을 “적극적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강릉경찰서”를 “강릉경찰서,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로 한다.

제13조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u>사항에 대하여</u>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u>사항을</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강릉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u>구현하기 위한</u>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2. ----- ----- ----- -- <u>구현하는</u> ----- ----- --.</p>
<p>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u>조성</u>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u>적극</u> 추진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 ----- ----- ----- <u>조성될</u> ----- ----- <u>적극적으로</u> ----- -----.</p>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릉교</p>	<p>제10조(협력체계 구축) ----- ----- -----</p>

육지원청, 강릉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
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
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
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 강릉경찰서, 춘천보호
관찰소 강릉지소 -----
-----.

제13조(포상) -----
----- 이바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